

제 459 호

1974. 9. 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광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875 호 :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수수료 징수조례	3
제 876 호 :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징수조례	4

◎ 고시

제 122 호 : 도시계획 용도지 역지적승인	8
제 124 호 : 도시계획시설 (물용청사 및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9
제 125 호 : 하천점용 (교량설치) 허가의 실효	9
제 127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사업설시계획 및 변경 인 가고지	10
제 129 호 : 사방지의 지정	10
제 130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도로) 지적승인 및 지적 일부변경	19
제 13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 승인	19
제 132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지	2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70 호 : 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21

제 171 호 : 환지예정지 일부제외변경공고 21

제 174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

지정업체내체지정및지정번호

변경공고 22

제 176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자금지원요령개정 23

제 177 호 : 기존재개발사업지구무효공고 30

◎ 사 령 31

조 레

국무총회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 징수조례를 아래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74년 9월 11일

① 서울특별시 조례 제 875 호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수수료 징수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수료의 기준)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1. 수수료는 매립면허지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자에 의하여 조성된 매립지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각호의 매립지 가액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저근지 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

가는 매립면허일 기준으로 하여 등록세법 제 2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아래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있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저근지로 되어있는 때에는 그중에서 최저 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저근지 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가 없을 때에는 최저 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3 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납부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는 면허 조건으로 정한다.

제 4 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면허취소 또는 면경 등의 사유로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9월 11일

③ 서울특별시조례제 876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요금의 기준) ①요금은 세
표 "요금산정기준표"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사
등 공유수면의 산출률은 지방재정
법 제 5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 3 조(요금의 산정방법) 요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요금은 연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 등
이라 한다)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한로 하되 1개월 미만
의 경우 16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이하는 월액의 반액으로
한다.

2. 요금은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
지의 가액은 등록세법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
지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
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점용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경
우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
가표준액에 의한다.

3. 점용등의 산정에 있어 1평 또
는 1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평 또는 1로 한다.

제 4 조(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공유
수면의 점용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 1호로 입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점용등을 하지 못하는

<p>부분에 해당하는 요금등은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와 시장이 특히 종업당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월별 이후의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p>
<p>제5조(요금의 징수시기) ①요금은 일시에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등의 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허가없이 점용등을 하는 때) 공유수면의 점용등을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당초 점용등을 계시한 때까지 소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등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p>
<p>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및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제8조(준용)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1.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등: 농지세의 납기 2. 기타 성격상 선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 시장이 정하는 납기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요금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p>	<p>제9조(징수의 위임)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제6조(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p>	<p>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p>

별표

요금 산정 기준 표

구 分	산 정 기 준
(1) 토지의 점용	<p>1. 농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p>2. 식물의 재식(농업제외) 및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또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40</p> <p>3.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점용면적에 대하여</p> <p>가) 임유농지세 해당 농지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 기준수확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p> <p>나) 유통농지세 해당 농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또는 수확예상액 의 100분의 40</p> <p>4.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평당 10원 다만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영업세 과세표준액(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2)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대기장, 탑의장(매 점포함)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56-7

구 분	산 정 기 준
(3) 유수의 점용	<p>1. 수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및 인수 연액·점용면적 평당 100원과 철구 1개당 30원의 합산액</p> <p>2. 인 수(지하수 채취의 경우 포함)</p> <p>(가) 공업용수: 월액 ₩/Sec 당 20,000 원</p> <p>(나) 농업용수: 연액 ₩/Sec 당 16,000 원</p> <p>3. 배 수(주수)</p> <p>(가) 공업용수: 월액 ₩/Sec 날 15,000 원</p> <p>(나) 기타용수: 연액 ₩/Sec 날 10,000 원</p> <p>4. 선박운전을 위한 이용 수익예상액의 100분의 30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p>5. 기타 점용 등 전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p>
(4) 산출물의 채취	<p>1. 토석·사력의 채취 성산지 시가에서 채취비와 상차비를 제외한 금액 의 100분의 70</p> <p>2.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하지 않은 것은 전호·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 1항 제 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p>
(5) 전 주	3. 채방: 평당 20 원
(6) 기타 점용 등	<p>연액·단주는 주당 150 원 회주·합주는 주당 300 원</p> <p>전 각항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p>

56-8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1. 전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로 지정고시된 도심부내 상업지역
 과 전설부고시 제 124 호 (72.4.11)
 로 지정고시된 주거지역 및 전설
 부고시 제 216 호 (73.6.5)로 지
 정고시된 상업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하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전설
 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1.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
 서 (도면표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

1974. 8. 26.

서울특별시장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비고
주 거 지 역	성동구 성수동 1가 385 외 376 일대	78,400 ㎡	
소 계		78,400 ㎡	
상 업 지 역	중구 회현동 2가 10 외 1 일대	7,700 ㎡	
상 업 지 역	중구, 종로구 도심부지역	6,271,600 ㎡	
소 계		6,279,300 ㎡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
 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 및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판내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 및 도로)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

가. 공용청사 결정 조서

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8. 30.

서울특별시장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공용청사用地	서대문구 서소문동 38 외 9 월지	4,250	법원청사(검찰청)

나. 노선 조서

구분	동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8	65m	태평로 2가	서소문동 36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5 호

하천점용(교량설치) 허가의 실효

하천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교량설치)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4. 8. 31.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허가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후온동 5번지 앞 하천(흑제천상류)
- 허가규모 : 길이 24미터, 폭 5.5 미터
- 허가목적 : 교량설치후 통로사용
- 실효일자 : 74. 6. 26
- 수허가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영동 219-11 서성원
- 실효사유 : 하중증기 한내공사의 학용

56-10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

주택개량을 위한 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외 1 구역 (신규) 및 고척구역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전설부고시제 294 호 (74.8.30) 및

제 280 호 (74.8.21.)로 사업실시계획 및 변경인가되었음으로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개량 2파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5.

서울특별시장

3. 사업 고시내역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동외 3 구역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면적	고시종별
명동구역	종로구 명동동, 와룡동 각 1부 한남 1구역	98,010㎡ 38,258㎡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척구역	용산구 한남동 일부 영등포구 고척동 일부	28,810㎡	(당초 면적 28,123㎡)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9 호

사방지의지정

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자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4. 9. 9.

서울특별시장

제 459 호 시 보 1974. 9~12 56-11

1. 사방지정지 내역서			소유자 또는 경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차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시 구 동							
서울 동대문	당心思리	산 1-2	임야	0.9200	정	수상협동조 합총영회	
# 성 동	신 당	# 24-178	#	0.5300	0.3300	중구소공 116-1	
#	#	# 24-179	#	0.3300	0.3300	#	
#	#	# 24-180	#	0.4000	0.4000	#	
#	#	가 락	# 55-1	#	1.2400	종로명물 3 가 69-9	
#	#	#	# 67-1	#	1.1500	원주중앙동 143	
#	#	#	# 67-2	#	0.6400	종로종로 4 가 104	
#	#	#	# 75-5	#	2.4900	서대문북아현 137-51	
#	#	#	# 76-1	#	7.2700	동래경기씨 중계공파동	
#	#	#	# 77-1	#	2.3900	#	
#	#	오 금	# 19-9	#	0.2600	성동문정 341	
#	#	#	# 19-10	#	0.3100	금의	
#	#	#	# 11	#	0.5500	충	
#	#	#	# 10	#	0.9000	전	
#	#	#	# 29-3	#	1.0315	28	
#	#	#	# 30-1	#	1.0315	경원	
#	#	#	# 33-1	#	2.0000	세	
#	#	#	# 4-	#	4.5300	상복성북 120	
#	#	방 이	# 26-1	#	1.8500	조	
#	#	#	# 27	#	0.8500	준양래	
#	#	#	# 36-3	#	0.8500	백제군	
#	#	#	# 37-1	#	0.1200	이정6	
#	#	#	#	#	1.7100	임동우	
#	#	#	#	#	0.3500	성동상왕십리 762	
#	#	#	#	#	0.3500	설봉상업 주식회사	
						한국의원은행	

56-12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주	소
서울	성동	방이	산 55-1	임야	0.8900	0.8900	성동송파	김한우
"	"	"	" 61	"	0.2500	0.2500	마포아현 619-19	이화우
"	"	"	" 47-4	"	0.3300	0.3300	종로공평 5-1	대구서씨사 기공파종승
"	"	"	" 47-1	"	2.7000	2.7000	"	"
"	"	"	" 47-3	"	0.7700	0.7700	"	"
"	"	"	" 78	"	2.6000	2.6000		서울시
"	"	"	" 87-1	"	0.8200	0.8200	종로신문 2가 1-104	김태경
"	"	"	" 87-2	"	0.5600	0.5600	성동가락 154	경주이씨별 제공파종승
"	"	"	" 77	"	0.8300	0.8300	서대문북아현 137-61	동래정씨충 창공파종승
"	"	"	" 94	"	0.7400	0.7400		오희남
"	"	"	" 84-2	"	0.9200	0.9200	성동방이 354	김원배
"	"	"	" 96	"	0.5300	0.5300	성동석촌 115	이창우
"	"	"	" 118-3	"	0.3310	0.3310	경기여주가남	구자인
"	"	"	" 118-4	"	0.6800	0.6800	"	"
"	거여	" 23-9	"	"	0.3100	0.3100	성동오금 590	서봉운
"	"	"	" 26	"	6.6800	1.0000	강화강화관절 667	유덕현의원
"	마천	" 2	"	"	3.4900	3.4900	이천율면북두리	안재숙
"	"	"	" 8	"	0.3700	0.3700	성동둔촌	구자금의원
"	"	"	" 13-1	"	2.0300	2.0300	성동마천 165	구영복
"	"	"	" 12-1	"	0.5100	0.5100	중구율지 5가 270-7	황국중
"	"	"	" 15	"	0.3000	0.3000	성동둔촌동	구자승의원
"	암사	" 64-1	"	"	2.0800	2.0800	성동암사 458-3	오수안
"	"	"	" 63-2	"	0.3100	0.3100	성동암사 444	이창남
"	"	"	" 34	"	0.7700	0.7700	동대문회기동 103-100	백재용의원
"	"	"	" 19-1	"	1.4800	1.4800	서대문북아현 123-31	임형병
"	"	"	" 24	"	0.7900	0.7900	종로신교 6-21	엄경선

시	구	동	지번	지	목	적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	소
서울	성동	암사	산 25-1	임야	1,1400	1,1400	국	유
"	"	"	" 26-	"	0,5400	0,5400	마포	장식
"	"	"	" 27	"	0,7100	0,7100	성동	호
"	"	"	" 26	"	1,4100	1,4100	마포	김승태
"	"	"	" 139-1	"	0,5401	0,5401	성북	김형락
"	"	반포	" 27-4	"	4,5620	4,5620	종로	화
"	"	"	" 28	"	1,8600	1,8600	"	태
"	"	"	" 29	"	0,4800	0,4800	서대문	조봉구
"	"	"	" 30	"	0,6200	0,6200	종로	조석래
"	"	"	" 39	"	0,4600	0,4600	서대문	차운연
"	"	염곡	" 3-1	"	0,8100	0,8100	중구	박수
"	"	"	" 3-4	"	1,6700	1,6700	"	8-
"	"	"	" 3-5	"	0,2300	0,2300	"	"
"	"	"	" 3-6	"	0,1800	0,1800	"	"
"	"	"	" 4	"	0,1400	0,1400	성동	박완수
"	"	"	" 5-1	"	2,0200	2,0200	성북	황태일
"	서초	"	" 4-1	"	3,1210	3,1210	중구	이인
"	"	"	" 21-3	"	0,8403	0,8403	장충	은차천
"	"	"	" 150-15	"	9,6900	9,6900	동선3가	정연석
"	"	"	" 150-2	"	7,9500	7,9500	서대문	학교법
"	성북	정동	" 16-1	"	1,1700	0,4000	남대문1가	해청관
"	"	돈암	" 1-13	"	0,4121	0,4000	성북	강형국
"	"	"	" 3-15	"	1,5805	0,7300	"	2인
"	"	"	" 3-17	"	0,7010	0,4000	"	"
"	"	"	" 85-1	"	4,9300	1,1200	성북	총
							돈암	신사

56-14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소재지			지목지	적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서울	성북	종암	산 2-62	임야 1,1400	0.8000 국세청
"	"	성북	" 25-52	" 2,7000	0.7000 산림청
"	"	석관	" 1-49	" 5,1700	0.8000 문화체육국
"	"	하월곡	" 2-11	" 23,8600	23,8600 서대문 청동 34 재단법인 배재학원
"	"	"	" 2-36	" 3,3310	3,3310 문화체육국
"	"	돈암	" 85-6	" 0,0922	0,6922 성북 돈암 산 85 흥천사
"	"	"	" 85-6	" 0,3316	0,3316 "
"	"	"	" 86-1	" 0,7100	0,7100 성동 신당 372-84 김재운
"	도봉	공농	" 196-1	" 0,2213	0,2213 보봉 공농 283 송영열
"	"	"	" 199-2	" 0,6800	0,6800 종로 종로6가 84 이석기의원
"	"	"	" 208-2	" 0,3000	0,3000 서울 농협
"	도봉	"	" 1-3	" 0,1400	0,1400 경기 의정부 장암 98 율한성
"	"	"	" 1-5	" 0,2000	0,2000 "
"	서대문	옹암	" 1-27	" 1,6222	1,6222 종로 예지 131 신용우
"	"	홍은	" 1-94	" 2,0115	2,0115 국유
"	"	"	" 1-96	" 1,1400	1,1400 "
"	"	"	" 1-180	" 1,1525	1,1525 "
"	"	녹번	" 9-6	" 0,2110	0,2110 "
"	"	"	" 2-1	" 0,7900	0,7900 종구 울지 1가 130-1 해동농업공사
"	"	"	" 2-2	" 1,7122	1,7122 "
"	"	진관	" 87-1	" 4,5200	4,5200 개성 부동 본점 446 오영석
"	"	"	" 87-5	" 0,7100	0,7100 서대문 진관 350 이용희의원
"	"	"	" 95	" 4,4500	4,4500 영동포 영동 94-15 구본형
"	"	"	" 96-1	" 1,2200	1,2200 경성부 소격정 142 이장용
"	"	상암	" 3	" 0,5500	0,5500 성동 신당 39 박삼열

시	구	동	지번	지	목	지	정	면	소유자 또는		철
									주	소	
서	울	서	대	문	상	암	산	4-17	임	야	국 세 철
"	"	"	"	"	"	"	"	4-14	"	1,7429	1,7429
"	"	"	"	"	"	"	"	4-15	"	0,5914	0,5914
"	"	"	"	"	"	"	"	4-23	"	1,8203	1,8203
"	"	"	"	"	"	"	"	4-24	"	1,8911	1,8911
"	"	성	산	"	16	"	"	0,5200	0,5200	서대문 성산 228	최 연 규
"	"	"	"	"	50-1	"	"	0,8020	0,8020	용산 청파3가 118-28	박 펠 용
"	"	"	"	"	50-2	"	"	0,3319	0,3310	중구 소공동 116-1	서 울 은 행
"	"	"	"	"	51	"	"	0,6600	0,6600	서대문 성산 254-1	김 성 만
"	"	증	산	"	8	"	"	0,3900	0,3900	경성 부수하정	길 최 쇠
"	"	"	"	"	24-7	"	"	0,8800	0,8800	마포 창전 347-2	윤전기의원
"	"	"	"	"	24-9	"	"	1,0200	1,0200	중구 남대문1가 14	주식 회은 사
"	"	"	"	"	24-10	"	"	0,6027	0,6027	종로 혜화 15-7	율 강 섭
"	"	"	"	"	24-11	"	"	0,1104	0,1104	서대문 증산 73-11	최 기 날
"	"	"	"	"	24-15	"	"	0,9100	0,9100	"	"
"	"	"	"	"	25-1	"	"	0,4219	0,4219	동대문 용두 238	오 학 은
"	"	"	"	"	25-2	"	"	0,1000	0,1000	서대문 대현 4-6	박 경 애
"	"	"	"	"	25-3	"	"	0,0608	0,0608	서대문 북이현 125-20	김 만 선
"	"	"	"	"	26	"	"	1,3100	1,3100	종로 혜화 15-7	율 장 설
"	수	수	세	"	10-1	"	"	0,3420	0,3420	용산 한강1가 148	윤 용 원
"	"	"	"	"	11-	"	"	0,3800	0,3800	성동 흥은 542	전 금 회은
"	"	"	"	"	34	"	"	0,2400	0,2400	중구 소공 116-1	주식 회은 사
"	"	중	동	"	6-5	"	"	0,9900	0,9900	서대문 북이현 123-7	길 을 식
영	동	포	오	구	"	39-18	"	0,1000	0,1000	중구 판동2가 78-6	김 해 대
"	"	"	"	"	39-19	"	"	0,1000	0,1000	중구 을지3가 103	이 우

56-16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土 재 지				지 목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서울	영등포	오류	산 39-20	임야	0.0800	0.0800	성복 일암5가 104-42 이 원 배
"	"	"	" 39-21	"	0.1300	0.1300	용산 효창6 김 익
"	"	향	" 53	"	0.4700	0.4700	영등포 항동산 8-1 이 상 훈
"	"	"	" 52-1	"	1.4200	1.4200	중구 필동 124-6 박 현 일
"	"	"	" 54-3	"	1.6600	1.6600	부천 소래 옥련리산 103 경기화학
"	"	"	" 56-1	"	1.2200	1.2200	" "
"	"	"	" 34-2	"	2.0800	2.0800	서대문 창천 31-62 정 순 만
"	"	"	" 34-3	"	0.0300	0.0300	영등포 항동 137 김 영 찬
"	"	"	" 34-4	"	0.1300	0.1300	" 138 김효택외2인
"	"	"	" 34-6	"	0.3300	0.3300	서대문 창천 31-62 정 순 만
"	"	"	" 34-8	"	1.3400	1.3400	용산 용산2가 산2 박 정 태
"	"	"	" 35	"	1.3400	1.3400	중구 다동 67 이 천 물사
"	"	"	" 31-1	"	1.9000	1.9000	영등포 항동 87 김 민 태
"	"	"	" 27	"	0.4500	0.4500	용산 청파1가 69-15 이 경 석
"	"	"	" 26	"	0.4500	0.4500	영등포 학동 6-1 이 상 훈
"	"	궁	" 12	"	1.1600	1.1600	부천 삼곡리 431-1 이 은 상
"	"	"	" 14-8	"	2.6600	2.6600	종로 사직 80-3 김태영외1인
"	"	"	" 18-7	"	1.3600	1.3600	서대문 북아현 1-120 윤 나 환
"	"	천왕	" 19-1	"	2.5300	2.5300	영등포 오류 8-26 한 경 택
"	"	고척	" 58-1	"	0.2000	0.2000	중구 도동 21-9 대한보증
"	"	"	" 58-6	"	0.4600	0.4600	보험주식 "
"	"	"	" 51-1	"	0.8700	0.8700	성복 삼선5가 299 송 영 수
"	"	독산	" 9	"	1.5100	1.5100	서대문 교북 108-4 이 현 무
"	"	"	" 8	"	3.6000	3.6000	성복 삼선3가 29-81 윤 인 상
"	"	"	" 110	"	1.6500	1.6500	성동 신당 45-22 안 창 일

소 사	제 자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	동				주 소	성 명
서울	영등포	복산	산 204-14	임야	0.4000	0.4000	영등포 어의도 145 오 데 원
"	"	"	" 204-13	"	0.4000	0.4000	동대문 면목 201-16 주 명 재
"	"	"	" 204-12	"	0.4000	0.4000	" 342-8 김 별 이
"	"	"	" 204-11	"	0.4000	0.4000	서대문 흥제 270-20 유풍 씨
"	"	"	" 204-10	"	0.2600	0.2600	마포 학수 85-15 김경옥의 7인
"	"	"	" 204-9	"	0.1600	0.1600	" "
"	"	"	" 204-7	"	0.1600	0.1600	" "
"	"	"	" 204-6	"	0.5310	0.5310	여수시 중앙 72 윤 선 자
"	"	"	" 204-6	"	0.5000	0.5000	마포 학수 85-15 김경옥의 7인
"	"	"	" 204-5	"	0.5000	0.5000	" "
"	"	"	" 204-4	"	0.0120	0.0120	" "
"	"	"	" 204-1	"	0.0810	0.0810	" "
"	"	"	" 204-2	"	0.0400	0.0400	영등포 구로 454-46 흥 계 문
"	"	"	" 4-3	"	0.1123	0.1123	마포 서교 295-4 장 치 백
"	"	"	" 5	"	1.1500	1.1500	중 중림 162 박윤술의 2인
"	"	시흥	" 100-6	"	1.9100	1.9100	종로 태평 3-가 28 주민유공자 명 대자조성위원회 충청영아인
"	"	"	" 100-7	"	2.5618	2.5618	중원 3 가 79
"	"	"	" 100-6	"	2.2502	2.2502	" "
"	"	"	" 6-2	"	33.6129	33.6129	영등포 영등포 1 가 90 장 윤 동
"	"	"	" 44	"	0.9502	0.9502	중구 울지 1 가 3 한일부동산 주식회사
"	"	"	" 39	"	0.2904	0.2904	관악 흑석 241-35 우영 전
"	"	"	" 34	"	1.3400	1.3400	중구 울지 1 가 3 한일부동산 주식회사
"	"	"	" 40	"	0.6400	0.6400	" "
"	"	"	" 38	"	1.2300	1.2300	" "
"	"	"	" 41-1	"	1.3100	1.3100	" "

56-18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소재지			지목지	적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서울	영등포	시흥	산 04-1	임야	6,0510	판악 흑석 64-24
"	"	"	" 19-4	"	1,0100	1,0100 서대문 녹번 24-18
"	관악	봉.천	" 153	"	4,4900	판악 노량진 김창희외 30인
"	"	"	" 98-5	"	1,3300	국 유
"	"	신림	" 190	"	0,2500	동대문 용두 정원영외 1인
"	"	"	" 124-2	"	2,1100	중구 필동 3 가 28-9
"	"	"	" 182-1	"	0,1500	최 성 순
"	"	"	" 181-2	"	1,6620	용산 한강 2 가 147
"	"	방배	" 102-2	"	2,3216	신 흥 물 산주식회사
"	"	"	" 84-1	"	1,5200	관악 방배 102-2
"	"	"	" 85	"	2,3600	한 무 영
"	"	"	" 86	"	2,3600	유 쇠 동
"	"	"	" 87-1	"	1,0100	용산 후암 55-6
"	"	"	" 88-1	"	1,0100	임 광 수
"	"	"	" 92-1	"	2,1700	"
"	"	"	" 93-1	"	0,2000	중 장충 171-102
"	"	"	" 94-1	"	4,1320	"
"	"	"	" 95-1	"	0,7300	임 광 수
"	"	"	" 96-1	"	74,5900	용산 후암 55-6
"	"	사당	" 97-3	"	74,5900	성북 돈암 38-34
					0,3905	판악 흑석 49-26
						김갑순외 1인
계			191필	373,7303	344,2827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36-19

◎ 서울특별시고시 제 130 호

도시계획시설(광장및도로)지적승인
및 지적일부변경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광장및
도로)을 다음과같이 지적승인 및 일
부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9

서울특별시장

가. 광장지적승인조서

구분	광장번호	광장명	면적	비고
신설	34	공군사관학교입	3,930 m ²	

나. 도로지적 일부변경조서

구분	동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대로	3	26	25'	9,000'	한강로 3가	행당동광장	용산동 6 가지내일
변경	"	"	26	"	9,000	"	"	부위치변경
기점	대로	3	48	"	4,800	대방동	신림동	공군본부후문앞위
변경	"	"	48	"	4,800	"	"	치일부변경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 13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
경 및 지적승인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사실에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
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9

서울특별시장

56-20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가.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3		6m	60m	사당동 128-4	사당동 128-1 앞	위치변경
변경	"	3		6	60	사당동 128-19	"	
기점	"	4		4	53	청파동 2가 10-95	청파동 2가 9-24	위치변경
변경	"	4		4	43	"	" 9-2	

변경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⑤ 서울특별시고시제 132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인가고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중인의 9개 구역 중 1974년도
사업시행 구역인 북아현제 2구역, 서래
고체 1구역, 고척구역 및 아현제 2구역
1. 건설부고시제 145호(74.5.13)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중인의 9개 구역 중 1974년도
사업시행 구역인 북아현제 2구역, 서래
고체 1구역, 고척구역 및 아현제 2구역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하고 동법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이
개량 2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
하고 동법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이
개량 2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
고제 1구역, 고체구역 및 아현제 2구역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고 시 내 역

가. 사업명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구역명	종류	위치	규모	비고
북아현제 2구역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84 m ²	
아현제 2구역	"	마포구 아현동	17,857 m ²	
서래고제 1구역	"	용산구 서래고동	12,343 m ²	
고척구역	"	영등포 고척동	29,606 m ²	

3. 관계도서생략

1974. 9. 10

서울특별시장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70호

환경예정지변경지정공고

1. 역촌,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
지를 지정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
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
리 1과 또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3. 서류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될것이나 송달받
지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
음한다.

첨부: 조서, 도면(생략) 1

1974. 8. 3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71호

환경예정지 일부계획변경공고

1. 망우추가(70.11.30 서공 244호)
및 화양추가(73. 8. 27 서공 163호)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한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변경
계획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7조
제55조 및 동법제 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이 변경 통보는 별도 토지소
유자에게 발송될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8. 30

서울특별시장

56-22.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 서울특별시공고 제 17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
업체 대체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공고

당시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기업체명
과 소재지변경 및 대표자변경, 지정번호

호 변경사항을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한다.

1974. 9.

서울특별시장

1. 대체기정업체

지정위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802	신흥물산 (주)	용산한강2 147	정두현	봉제품 (가방)	802	신흥물산 주식회사	용산한강2 147	함현선	봉제품 (가방)
207	스완복장 기업사	중구 오장 동 69-2	장지덕	Y 샤스	415	스완산업 주식회사	성동성우2 289-49	장지덕	Y 샤스
1014	동광섬유 공업(주)	도봉구미 아동 317-1	최병규	피복	1014	동광섬유 공업(주)	도봉미아 동 317-1	고윤석	피복

2. 지정번호 변경업체

당초지정번호	변경된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비고
4002	1209	유나통상(주)	신찬문	성동암사동 520-25	세타/풀치기	천호출장소
1029	508	신양편물공업사	임광준	성북정릉동 432-2	세타	
508	1029	대성전선(주)	한정훈	도봉미아동 61-3	나동선	

제 459 호 시 보 1974.9.12 56-23

◎서울특별시공고제 176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
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74.9.1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호

부 칙

1. 본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신청

서울특별시 공고 제 79 호(74.4.27)
에 의거 회사가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면접 사업계획
서 및 관계증명서류를 접수하여 신청
합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및 관계증명서류

1974.

신청인주소

연 채 명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56-24 제 459 호

시

보

1974.9.12

사 업 제 회 서

1. 기업 채 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업 종
	공장							생산 품명
	기타							창립 년월일
종업원수	(년 월 일 현재)						총자산액	(년 월 일 현재)
구 분	상 시	임 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동자산	
사무직							고정자산	
기술직							기타	
기타							계	
계							조합가입명	

2. 사업 개요(기업체 연혁 및 일반사항)

3. 생산 공정도 (별첨)

제 459 호

시 보

1974.9.12 56-25

4. 생산능력 및 생산판매계획(1년분)

품명	규격	단위	생산능력		생산 및 판매계획								
					1977년도			1978년도			1979년도		
			수량	금액	생산	국내판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5. 생산 및 판매실적(1년분)

품명	규격	단위	1977년도					
			생산			판매		
			수량	금액	국내판매	수량	금액	국외판매(수출)
			천원		천원			천원

(첨부된 수출실적증명과 일치시킬것)

56-26 제 459 호

시 보

1974.9.12

6. 가 드 애

주 : 가득액 = 수출금액 (FOB) (또는 군납금액) - 수입금액 (CIF)

가득율 = $\frac{\text{가} \quad \text{득} \quad \text{액}}{\text{수} \quad \text{출} \quad \text{금} \quad \text{액} \quad (\text{L/C Value})}$ × 100

7. 기타 특기사항

1974. 월 일

신청인 주소

업체명

대표자

(6)

※ 첨부 서류:

1. 영업감찰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1부
3. 섬유류 생산업체 섬유시설 등록증 1부
4. 수출실적 확인서류(가, 나, 다중 하나만 선택)
 - 가. 외국환은행발행 수출대금 및 입금증명서 1부
 - 나. 세관발행 수출완료증명서 1부
 - 다. 세무서발행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면세증명서 1부
5. 수출계획 확인서류(가, 나중 하나만 선택)
 - 가. 수출신용장 1부
 - 나. 수출계약서 및 주문서 (해외공판장 확인문) 1부
6. 기타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974. 9. 12.

각 서

금번 폐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귀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반히 할 때에는 귀시의 지정취소조치는 물론 기타 여하한 행정조치가 있어라도 이를 하등의 이의없이 감수 하겠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준수사항

가.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대체 지정신청을 한다.

1) 개인이 법인이 되거나 법인이 개인이 되는 경우

2)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업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3) 업체를 양도하거나 이전한 경우

4) 생산물을 변경하는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1)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체업하는 경우

2) 수출을 중단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3)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 다. 매월의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수출상황보고서) 생활등재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라. 매년 12.10까지 익년도 수출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마. 기타 각종 행정지시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한다.

1974.

업체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56-30 제459호

시

1974.9.12

◎서울특별시공고제 177호

기존재개발사업지구 무효공고

1.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내 도동 재개발사업지구(건설부

고시 제155호, 68.3.14)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31조의 규정에 저촉

되어 무효임으로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배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74. 9. 4

서울특별시장

내 역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도동지구	중구 도동 1가 및 양동 일부 지역	4.144 평	도면생략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사령

◎ 1974. 8. 26.

판 악 구 주 지방행정 사 이 철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이 두 기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이 두 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양 서 출장소 지방행정 최 궁 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송 총 철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송 총 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6 월에 처함.

용 산 구 근무를 명함.

울 산 구 지방행정 유 인 배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유 인 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 월에 처함.

복직을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조 병 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서 창 흐

기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서 대 문 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조 병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양 창 동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양 창 동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용 산 구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최 재 봉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최 재 봉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배 환 각
수도사업소 서 기 보 배 환 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 시 가 스 지방행정 김 원 체
사 업 소 서 기 보 김 원 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아동병원 주방행정 김한영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김홍기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양광석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전규병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서기보 송희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김대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 1974. 8·28 서울특별시 지방부 안찬희 국방대학원입교 (74·9·2-) 75·7·12)를 명함. 성북구복지과 지방농림 이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봉 1월에 처함. 관악구 지방자체 문연송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기원보 김성경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하수파 지방토목 황의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공원과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토목 강희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	--

한국기사보	유기복	경기정기정보제보	주유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3월에 처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경기정기정보제보	황철성
영신파지방전속	박남준	경기정기정보제보	이충하
지하철 파견근무 해제함.	서울특별시 부이사관	경기정기정보제보	강성만
국방대학원일교(74. 9. 2- 75. 7. 12)를 명함.	이인재	경기정기정보제보	홍성우
1974년 8월 28일	대통령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 1974. 8. 30		○ 1974. 8. 30	
공무원교육 원교학과 서기관	김영근	공무원교육 원교수부 사무관	박길운
지하철본부 운수과장에 보함.	남상수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직무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직무		대리를 명함.	
○ 1974. 8. 29		문약구 지방행정사	박을훈
양서출장소	김한영	경기정보제보	
서대문구	이원경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임종순	성동구 지방행정사	두정기
용산구	강현태	경기정보제보	
수도사업소	김영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영동포구	이현목	1,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수도사업소	김영술	처함.	
성동구	체석원	전호출장소 시민과장에 보함.	
수도사업소	최영두	동대문구 주방행정사	김한영
아동보호소	체석원	인사 292-2025(74. 8. 26자)	
동대문구	최영두	정체처분 발령 제736호) 중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56-34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전보부서 발령을 놓일자로 취소함.		마포구보건소보건지도과장에 보함 중 구 지 방 농 립 사 현 영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 ◎ 1974. 9. 1 서영석 서대문병원 지방간호 기사보 정경자 지방의무기과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찰국 파견근무를 명함. 한 강 지 악 토 목 원 건설사업소 기 원 유재길 도봉구 파견근무를 명함.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김명석	감사담당관실	3	지방행정주사	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심상용	영동출장소	5	"	영동출장소	"	
유근박	관재과	3	"	관재과	"	
장유식	사회과	6	"	사회과	"	
염무실	운수1과	5	"	운수1과	"	
이정복	종로구	5	"	종로구	"	
송규석	중구	8	"	중구	"	
김소구	성동구	12	"	성동구	"	
김동철	서대문구	6	"	서대문구	"	
김봉준	마포구	6	"	마포구	"	
김복경	용산구	7	"	용산구	"	
홍부한	영동출장소	9	"	영동출장소	"	
서진홍	은평출장소	3	"	은평출장소	"	
김충원	양서출장소	8	"	양서출장소	"	
남해균	서대·문병원	3	"	서대문병원	"	
황재립	관악수도	4	"	관악구수도	"	

성명	발행 사항				현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신동식	안전담당관실	6	지방행정주사	안전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용덕	인사과	5		인사과				
김관희		3						
김태식	세정과	8		세정과				
박순원		7						
박종철		3						
최재후	아동재화과	4		아동재화과				
전대식	아관연	3		아관연				
민병철		9						
김석봉		5						
임생규	주택행정과	3		주택행정과				
김의전	운수과	1		운수과				
김차중	운수과	4		운수과				
최율호	운수과	5		운수과				
임원재		5						
민성기	증로구	4		증로구				
유자완	증구	4		증구				
윤종해	증구	8		증구				
설현재	증구	8		증구				
김충선	증구	8		증구				
김성배	증구	3		증구				
김군일	증동	4		증동				

56-36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성명	발령사함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인준식	성동구	3	지방행정주사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환모	성북구	3	"	성북구	"	
하태종	"	4	"	"	"	
김형구	"	4	"	"	"	
박주환	도봉구	3	"	도봉구	"	
조학래	"	3	"	"	"	
김용재	서대문구	10	"	서대문구	"	
고광희	"	10	"	"	"	
서명승	마포구	4	"	마포구	"	
이사영	"	6	"	"	"	
이영우	용산구	6	"	용산구	"	
권오섭	"	9	"	"	"	
조승찬	"	5	"	"	"	
장중섭	"	8	"	"	"	
김창원	영등포구	6	"	영등포구	"	
박세근	관악구	6	"	관악구	"	
한상영	천호출장소	4	"	천호출장소	"	
민윤식	은평출장소	4	"	은평출장소	"	
정운효	"	4	"	"	"	
오형진	양서출장소	6	"	양서출장소	"	
최남규	아동병원원	6	"	아동병원원	"	
윤병여	동부병원원	3	"	동부병원원	"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56-37

성명	발행사함				현적			
	부서	호봉	직급	급	부서	직급	급	
이재성	충북 행정원	3	지방행정주사	부서	충북 행정원	지방행정주사보	부서	
주도기	성동 수도	5		부서	성동구 수도		부서	
김명기	동대문 수도	12		부서	동대문구 수도		부서	
이남재	자동차정비창	6		부서	자동차정비창		부서	
이삼봉	자동차운수사업소	3		부서	자동차 운수		부서	
조만형	시민과	4	지방행정주사보	부서	시민과	지방행정서기	부서	
김영배	중로구	6		부서	중로구		부서	
성중모	"	9		부서	"		부서	
이석규	충	5		부서	충		부서	
정현식	동대문구	5		부서	동대문구		부서	
이희순	"	5		부서	"		부서	
원봉재	성동구	7		부서	성동구		부서	
김성환	봉구	7		부서	봉구		부서	
홍순태	"	5		부서	"		부서	
신극글	서대문구	9		부서	서대문구		부서	
이종실	포구	12		부서	포구		부서	
최충철	"	6		부서	"		부서	
이경수	용산구	5		부서	용산구		부서	
정치환	"	5		부서	"		부서	
안명석	영등포구	8		부서	영등포구		부서	
정완수	"	5		부서	"		부서	
김봉우	악구	12		부서	악구		부서	

56-38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성명	발령사함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장승희	판약구	12	지방행정주사보	판약구	지방행정서기	
한덕삼	영동출장소	9	"	영동출장소	"	
승병석	온평출장소	8	"	온평출장소	"	
윤완	"	12	"	"	"	
장시찬	양서출장소	10	"	양서출장소	"	
양사승	도봉구	7	"	도봉구	"	
배한승	대방부녀보호소	5	"	대방부녀보호소	"	
이세영	대지남산공원관리소	9	"	대지남산공원관리소	"	
이학성	중기관리사업소	12	"	중기관리사업소	"	
이상훈	충무파	8	"	충무파	"	
이재완	인사파	5	"	인사파	"	
김병한	"	2	"	"	"	
박준일	시립중	4	"	시립중	"	
목영국	정당로	6	"	정당로	"	
조규만	개관로	7	"	개관로	"	
한학선	"	7	"	"	"	
김명원	"	5	"	"	"	
장용선	"	5	"	"	"	
김용수	"	3	"	"	"	
이광수	중구	3	"	중구	"	
첨합수	중구	7	"	중구	"	
박대환	중구	5	"	중구	"	

성명	발령사함				현지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김정수	중구	6	지방행정주사보	중구	지방행정점서기	
이창복	동대문구	5	"	동대문구	"	
고석상	"	5	"	"	"	
고순월	"	9	"	"	"	
최광순	"	5	"	"	"	
김홍찬	"	3	"	"	"	
이철웅	"	5	"	"	"	
조경환	중구	5	"	중구	"	
정우진	성동구	6	"	성동구	"	
신식근	성북구	5	"	성북구	"	
조민환	"	6	"	"	"	
김길태	"	3	"	"	"	
유동규	"	5	"	"	"	
조한식	"	3	"	"	"	
오정선	"	3	"	"	"	
정수연	도봉구	5	"	도봉구	"	
김영길	"	6	"	"	"	
우준재	"	5	"	"	"	
이창문	"	3	"	"	"	
이병건	서대문구	8	"	서대문구	"	
정택구	"	5	"	"	"	
박금웅	"	4	"	"	"	

56-40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성명	발명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장성동	서대문구	5	지방행정주사보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구원희	마포구	6	"	마포구	"	
이준석	용산구	3	"	용산구	"	
유양범	"	7	"	"	"	
이종영	"	3	"	"	"	
손인복	"	3	"	"	"	
박용만	"	5	"	"	"	
박준상	"	5	"	"	"	
김성수	영등포구	5	"	영등포구	"	
이광옥	"	9	"	"	"	
김기종	"	4	"	"	"	
곽명선	"	5	"	"	"	
박승재	"	4	"	"	"	
조봉원	"	5	"	"	"	
유석형	"	5	"	"	"	
최이현	"	4	"	"	"	
박종태	"	5	"	"	"	
박재진	관악구	5	"	관악구	"	
정태영	"	5	"	"	"	
박상현	"	3	"	"	"	
김기정	"	3	"	"	"	
이옹수	"	3	"	"	"	

성명	발령사항			현지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박정노	천호출장소	3	지방행정주사보	천호출장소	지방행정서기
유영택	양서출장소	4	"	양서출장소	"
박금동	종로구수도	3	"	종로구수도	"
최종순	"	9	"	"	"
이주영	동대문수도	4	"	동대문수도	"
한상은	성동수도	6	"	성동수도	"
윤석춘	성북수도	5.	"	성북수도	"
백승균	"	8	"	"	"
김인영	도봉수도	4	"	도봉수도	"
이유형	서대문수도	8	"	서대문수도	"
권승만	"	9	"	"	"
이용주	용산수도	3	"	용산수도	"
김현규	"	5	"	"	"
김상수	영등포수도	5	"	영등포수도	"
남찬희	"	6	"	"	"
황영용	관악구수도	6	"	관악구수도	"
최정대	도시가스사업소	5	"	도시가스	"
박용주	동부건설사업소	7	"	동부건설	"
박석용	"	3	"	"	"
서재학	자동차운수사업소	6	"	자동차운수사업소	"
방종춘	종로구	3	지방행정서기	종로구	"
양준중	"	5	"	"	"

56-42 제459호

시 보

1974.9.12.

성명	발령사항				현지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정수진	충로구	2	지방행정서기	충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조종학	충구	5	"	충구	"	
최석근	"	4	"	"	"	
임준식	"	6	"	"	"	
김성근	"	11	"	"	"	
윤성국	동대문구	4	"	동대문구	"	
정동화	"	4	"	"	"	
이병택	"	5	"	"	"	
장복환	"	3	"	"	"	
강문경	"	6	"	"	"	
이도빈	"	2	"	"	"	
박현명	성동구	9	"	성동구	"	
김기호	"	2	"	"	"	
조창호	"	9	"	"	"	
김경준	"	3	"	"	"	
박승태	성북구	6	"	성북구	"	
곽지찬	"	2	"	"	"	
이혁구	"	3	"	"	"	
송재로	"	4	"	"	"	
오철천	도봉구	4	"	도봉구	"	
안홍양	"	2	"	"	"	
최현구	"	2	"	"	"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56-43

성명	발령사함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김철희	서대문구	4	지방행정서기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형학		4				
이안기		5				
우달재		10				
임박문		2				
이홍우	마포구	5		마포구		
유진성		2				
이동환	용산구	4		용산구		
박수합		12				
제정호	영등포구	6		영등포구		
김종국		3				
변형식	관악구	3		관악구		
고동식		2				
최현창		3				
최준일		5				
김용희	천호출장소	5		천호출장소		
유천호		4				
김용근		9				
오세운		3				
조연봉	영동출장소	10		영동출장소		
박준호	은평출장소	5		은평출장소		
김홍주		4				

성명	발령자항			현지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명진상	은평출장소	5	지방행정서기	은평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최기현	양서출장소	3	"	양서출장소	"
송경용	도봉구보전소	4	"	도봉구보전소	"
이기찬	북부녹지사업소	6	"	북부녹지사업소	"
사공관	서대문수도사업소	3	"	서대문수도사업소	"
강탁원	중구	5	"	중구	"
허창수	성동	3	"	성동	"
김화용	용산	7	"	용산	"
유세환	동대문	5	"	동대문	"
하홍선	시설관리과	2	"	시설관리과	"
최승천	종로구	4	"	종로구	"
조학봉	"	5	"	"	"
김진기	"	4	"	"	"
윤영훈	"	6	"	"	"
엄탁용	"	4	"	"	"
박창수	"	4	"	"	"
황좌성	"	3	"	"	"
이국희	중구	6	"	중구	"
최춘섭	"	5	"	"	"
윤영의	"	3	"	"	"
박정길	"	4	"	"	"
이충구	"	3	"	"	"

제 459 호

시 보

1974.9.12. 56-45

성명	발령사함				현제		
	부서	호봉	직급	급	부서	직급	급
최수웅	중 구	3	지방행정서기	중	구지방행정서기보		
한재관	"	3	"	"	"	"	"
김진규	"	3	"	"	"	"	"
이수성	"	3	"	"	"	"	"
정해식	"	3	"	"	"	"	"
김홍기	"	4	"	"	"	"	"
유상곤	"	3	"	"	"	"	"
김호흡	"	4	"	"	"	"	"
김대영	"	4	"	"	"	"	"
박정하	"	2	"	"	"	"	"
한정의	"	2	"	"	"	"	"
이정재	"	3	"	"	"	"	"
박기호	동대문구	5	"	"	동대문구	"	"
원영식	"	6	"	"	"	"	"
이준배	"	2	"	"	"	"	"
장재남	"	6	"	"	"	"	"
조희월	"	2	"	"	"	"	"
임병규	"	4	"	"	"	"	"
이충봉	"	4	"	"	"	"	"
김재형	"	4	"	"	"	"	"
김홍남	"	11	"	"	"	"	"
정태일	"	2	"	"	"	"	"

56-46 제 459 호 시 보 1974.9.12.

성명	발령사함				현직			
	부서	호봉	작급	금	부서	직	금	
박금식	동대문구	3	지방행정서기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윤원운	"	5						
김홍수	"	5						
장병재	"	2						
최광억	"	4						
권희식	"	3						
권오광	"	3						
오창록	"	2						
김승호	"	4						
임충민	성동구	6			성동구			
이은실	"	5						
서종태	"	4						
순윤원	"	8						
양석구	"	4						
이계룡	"	6						
황천천	"	3						
권상현	"	2						
지정구	"	4						
강덕수	"	3						
조재호	"	5						
황태성	"	3						
박천환	"	3						

성명	발령사함				연직		
	부서	호봉	지급	부서	직급		
김귀옥	성동구	3	지방행정서기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로		
이규석	"	3	"	"	"		
박천식	"	2	"	"	"		
문재상	"	3	"	"	"		
송효중	"	3	"	"	"		
라재균	"	3	"	"	"		
윤갑섭	"	2	"	"	"		
송선경	"	2	"	"	"		
서기상	"	2	"	"	"		
남극노	성북구	3	"	성북구	"		
유영호	"	2	"	"	"		
조천희	"	4	"	"	"		
김철수	"	3	"	"	"		
배기영	"	2	"	"	"		
장원석	"	2	"	"	"		
남정록	"	4	"	"	"		
박기웅	봉우리	4	"	봉우리	"		
오세태	"	5	"	"	"		
김대우	"	4	"	"	"		
박상원	"	4	"	"	"		
소개익	"	3	"	"	"		
박영자	"	4	"	"	"		

56-48 제 459 호 시 보

1974.9.12

성명	발령사항				현지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이 춘 실	서 대 문 구	5	치방행정서기	서 대 문 구	치방행정서기보	
김 주 기	"	5	"	"	"	
정재연	"	3	"	"	"	
유동규	"	3	"	"	"	
이권철	"	3	"	"	"	
조남현	"	4	"	"	"	
김정배	"	2	"	"	"	
유남호	"	2	"	"	"	
강한수	마 포 구	4	"	마 포 구	"	
윤승	"	6	"	"	"	
김종국	"	3	"	"	"	
한기정	"	6	"	"	"	
전양원	"	4	"	"	"	
정대용	"	3	"	"	"	
윤경열	"	3	"	"	"	
윤경숙	"	3	"	"	"	
김용광	용 산 구	7	"	용 산 구	"	
조수완	"	2	"	"	"	
장재관	"	6	"	"	"	
이정의	영 동 포 구	3	"	영 동 포 구	"	
이상권	"	6	"	"	"	
권용선	"	2	"	"	"	

성명	발령 사항			현지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정원영	영등포구	2	지방행정서기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휘수	"	5	"	"	"
전만수	"	3	"	"	"
박재현	"	4	"	"	"
강석원	"	3	"	"	"
박정기	"	2	"	"	"
김웅규	관악구	5	"	관악구	"
신경철	"	7	"	"	"
최용환	"	3	"	"	"
조태혁	"	5	"	"	"
유군식	"	4	"	"	"
정윤호	"	3	"	"	"
최중국	"	2	"	"	"
노영래	"	3	"	"	"
신일근	천호출장소	4	"	천호출장소	"
김의효	"	4	"	"	"
서수원	"	4	"	"	"
김대중	"	4	"	"	"
김영준	"	3	"	"	"
강상도	"	2	"	"	"
황규식	영동출장소	3	"	영동출장소	"
이상길	"	4	"	"	"

성명	발령		차항		전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유창진	영동출장소	2	지방행정서기	영동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강장원	은평출장소	4		은평출장소		
백의웅		4				
홍기		2				
홍성한		3				
민석기		3				
고광순	양서출장소	3		양서출장소		
서광태	종로구수도사업소	3		종로구수도사업소		
이광순		5				
이인표	동대문수도사업소	9		동대문수도사업소		
박창열		9				
이범동		4				
조운영		8				
홍태일	성동수도사업소	3		성동수도사업소		
제영수	성북수도사업소	4		성북수도사업소		
송영환		3				
박상율	서대문수도사업소	3		서대문수도사업소		
이성구		3				
김지현		4				
김길영	마포수도사업소	3		마포수도사업소		
이기표		3				
이종택		7				

성명	발행사함			현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장문학	마포수도사업소	4	지방행정서기	마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신민생	"	2	"	"	"	
곽일환	용산수도사업소	3	"	용산수도사업소	"	
김병호	"	2	"	"	"	
김태용	영등포수도사업소	4	"	영등포수도사업소	"	
김정오	"	3	"	"	"	
이성언	관악수도사업소	3	"	관악수도사업소	"	
김홍현	"	3	"	"	"	
강희덕	아동병원	3	"	아동병원	"	
유인화	"	2	"	"	"	
이채규	서대문병원	2	"	서대문병원	"	
송인창	정신병원	2	"	정신병원	"	
박종래	동대문근로자회관	2	"	동대문근로자회관	"	
이경희	영등포	4	"	영등포	"	
염동화	도시가스사업소	6	"	도시가스사업소	"	
박승노	"	4	"	"	"	
박밀재	한강건설사업소	5	"	한강건설사업소	"	

56-52 제 459 호

시 보

1974. 9. 12.

지하철본부 주 방 행 정 사	김 상 토	성 동 구 지 방 행 정 서 기	황 천 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연로파파전 근무를 명함.	
9 호봉을 급함.		서 경 개 발 지방행정 주 사 보 박 준 일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업무파파전 근무를 명함.	
양 정 과 행정주사보 김 계 원			정 오 석
행정주사에 임함.		지방행정주사보 시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1 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영 등포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 김 순 호			안 도 영
행정주사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보 시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1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부녀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보 박 재 흥		가 축 시 장 지방축산 김 동 성	
행정서기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3 호봉을 급함.		서 대 문 구 지방축산 김 동 혁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사 보 이 흥 열		천호출장소 지방축산 장 현 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가축시장 근무를 명함.	
2 호봉을 급함.		성 동 구 지적기원보 최 강 섭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근무를 명함.	
운수 3 과 주 방 행 정 사 임 천 태		용 산 구 지적기원 김 훈 주	
연로파파전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 등출장소 주 방 행 정 사 심 상 용		동 대 문 구 지방토목 배 동 현	
공보실파전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기원보시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농림원	이용태	나병구
관악구 균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입함.
관악구 지방농림원	이종수	1호봉을 급함.
양서출장소 균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균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농림원	이성수	김대동
종로구 균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입함.
종로구 지방농림원	김상태	1호봉을 급함.
성북구 균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균무를 명함.
정신병원 지방보건원	전병희	송인록
종로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
중구 지방농림기원보시보	김재강	1호봉을 급함.
도봉구 균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균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농림원	최원순	김대성
중구 균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
대구시 지방약무 남구보건소 기원	신상구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단속과 균무를 명함.
지방약무기원에 입함.		서울철도청 지방철도국 이천우
7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동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김기효	명함.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입함.		지방철도원 8동급에 입함.
1호봉을 급함.		3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 균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균무를 명함.

56-54 제 459 호	시	보	1974.9.12.
◎ 1974. 9. 2			
기 전 과 지방기체 기사보	김상우	충청남도 지방행정 은산군는산읍 서기	황경준
환경과 지방화공 기원보	최태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전방행정서기에 임함.	
경상북도지사	구자춘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장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간	양택식	전라남도 지방행정 곡성군마을과 서기	김영안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1974. 9. 2.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대통령		6호봉을 급함.	
◎ 1974. 9. 3		성동구 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비서관 (시장실) (3급을상당)	정상진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학과 사무관서보	진영호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행정사무판에 임함.	
총무과 지방비서관 (시장실) (3급을상당)	엄동혁	1호봉을 급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공무원교육원교학과 지도제장에 보함.	
1974. 9. 5		동대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시보	최인호
전라남도 지방행정 강진군성천면 서기보	조수질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 1974. 9. 6			
단속과 지방토목 교수부	김대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판 조운재			
총무과(시장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 1974. 9. 7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 지방행정 내무국사무과 주사	소 병 회	유 순 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1호봉을 급함.
3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안 청 사
총무과 비서관 (시장실) (3급상당)	이 두 선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입함.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 1974. 9. 10		유 영 화
안 육 회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주 연 장
이 익 회		지방마시 (4간상당)에 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2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총무과 (시 장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송 금 선	시청각발 지방행정 담당관실 서기 김상암 부직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시정의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p>경상북도 비상대 경주시서부과 (3호봉장) 대 통령 비서관 (3간 상당)에 임함. 2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 군무를 명함.</p> <p>1974. 9. 10.</p> <p>대 통령 소 병희 지방비서관 (3간 상당)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총무과 (시장실) 군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순병회 원에 의하여 그직을 역임함.</p> <p>◎ 1974. 9. 15.</p> <p>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임함. 박종호 1호봉을 급함. 공업과 군무를 명함.</p>
--	---

서 울 특 별 시 창
